

의안번호	2218316
의 퇴 인	김영진 의원
회 답 일	2026. 6. 1.
추계번호	26A21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8조제4항 삭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 규정 삭제 － 중앙관서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취한 조치에 불복하는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재량규정
2	안 제28조의2 (조정·재정의 신청)	○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다음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 또는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된 사항 －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 지체상금과 관련된 사항 － 증거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한 금전적 분쟁으로서 개산계약의 정산, 지연배상금, 선금반환, 기성대가와 관련된 사항 등	재량규정
3	안 제31조의4 (소액조정·재정 등의 심사)	○ 소액조정·재정 등의 심사 － 분쟁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재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의 조정·재정은 위원회의 조정·재정으로 봄	재량규정
4	안 제31조의5 (부당한 특약등의 심사)	○ 부당한 특약등의 심사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특약이 부당한지 의문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심사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31조의6제4항 (조정·재정의 대리인)	○ 중소기업자 등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의 자격·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6	안 제31조의7 (전담부서의 설치)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 전담부서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8조제4항 삭제(이의신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8조의2(조정·재정의 신청)	
3	안 제31조의4(소액 조정·재정 등의 심사)	
4	안 제31조의5(부당한 특약등의 심사)	
5	안 제31조의6제4항(조정·재정의 대리인)	
6	안 제31조의7 (전담부서의 설치)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의 개정내용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등 금전적 분쟁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재정(裁定)제도를 도입하고, 조달기업이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원회에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주기관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부당한 특약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위원회의 조정·재정 및 사전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자 등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설치

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¹⁾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재정 및 사전심사 건수의 변동과 소요 비용, 국선대리인의 선임 규모 및 보수 수준,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조직 구성과 인력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및 전담부서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위원회의 신청 및 조정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 건수는 159건(연평균 53건)·조정 건수는 72건(연평균 24건)으로 나타남

[표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조정 건수 현황: 2023~2025년

(단위: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평균
신청 건수	46	53	60	159	53
조정 건수	20	25	27	72	24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전담부서 구성·운영의 경우 재정경제부 내 기존 조직(계약분쟁심사과) 활용이 가능하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